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42
----------	------

발의연월일 : 2017. 2. 6.

발 의 자 : 이은권·배덕광·윤상현
조경태·민경욱·이헌승
김석기·김성찬·곽대훈
이종명·김성원·염동열
박덕흠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음.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공적인 간격을 자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지만, 설립이 어렵고 그 목적이 사회경제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의 지출액이 적고, 투명성이 낮으며, 공익검증의 미비로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

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므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이에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익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켜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현행 공익법인의 적용범위가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의 개방적인 포괄조항으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을 공익목적사업에 대해 공익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하며,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별표 1).

다. 공익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성격 및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방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전의 정관에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필수사항을 추가하고 별표 2에 표준정관을 예시함(안 제4조 및 별표 2).

라.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국민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익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익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해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

의'로 전환함(안 제8조).

사. 설립인가의 취소는 상시적인 공익인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통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강제)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개선의 경과를 살펴본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임의)로 나누어 운영함(안 제9조).

아.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9조).

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분류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함(안 제23조).

1) 공익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현행 보통재산을 운영재산으로 전환함.

2) 기본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정자산 등으로 하고, 기본재산으로 과다 편입되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정관에 정한 매년 일정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카. 결산상 잉여금을 운영재산으로 전입하고, 공익목적사업별 전용계좌 사용, 각종 정보의 열람과 제출 및 공시를 강화함(안 제24조).

타.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보고의 요구나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 등을 하거나 필요한 명령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26조).

파.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공익법인의 명칭사용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시 거짓·명령위반·공익을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민공익위원회 위원 등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보완함(안 제30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켜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목적사업”이란 학술·장학·자선(慈善), 그 밖의 공익에 관한 별표 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익법인”이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에 대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익인정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말한다.
- ② 공익인정을 받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을 인정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정관 작성은 별표 2의 표준정관 양식에 따른다.

1. 명칭
2. 소재지
3. 목적
4.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
5. 법인의 수단은 오로지 정관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내용
6.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이나 이사, 감사, 사원, 사용인 등에 대한 보수 등이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
7. 법인은 이타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수행에 있어 이사, 감사, 사원, 사용인, 그 밖의 법인 관계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8.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취지

9.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할 일정액(매년 운영재산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존립기간 균등액 이상)을 지출하는 운영계획이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을 것(사단법인 및 자산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재단법인은 제외한다)
 10. 정치활동(정치인 후원, 지원, 홍보) 등 금지에 관한 사항
 11. 불법적이거나 기본적인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1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13.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투명한 공시 및 공고와 이에 대한 방법
 16.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8. 존립시기와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무관청) 이 법에서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의 구분에 따라 국민공익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국민공익위원회 지부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국민공익위원회
 - 가.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인

나. 공익목적사업을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구역 내에서 행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한 법인

다.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익목적사업
을 행하는 법인

2. 제1호의 공익법인 이외의 공익법인: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
시·광역시·도의 국민공익위원회 지부

제6조(공익인정의 신청) ①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익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공
익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 수익사업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사업수행에 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
는 서류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
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인정) ① 주무관청은 제6조의 공익인정의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단 및 재단법
인에 대하여 공익을 인정한다.

1. 공익목적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할 것
2. 공익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수입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3.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이사, 감사, 사원 등 사용인, 그 밖에 해당 법인의 관계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4. 공익법인에 대해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기부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5. 공익법인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투기적 거래, 높은 금리의 용자, 공공질서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
6. 정치활동(정치인 후원, 지원, 홍보)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7. 불법적이거나 기본적인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8.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할 일정액(매년 운영재산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존립기간 균등액 이상)을 지출하는 운영계획이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을 것(사단법인 및 자산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재단법인은 제외한다)
9. 이사, 감사, 사원 등에 대한 보수(상여금, 퇴직금, 기타 재산상 이

익은 포함한다) 지급 규정이 있고, 그 범위가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을 것

10. 이사 및 감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

11.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단체와 특수관계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해산이나 청산을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

13. 제20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 범칙행위의 처벌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14. 공익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이 완료되고 3년이 경과 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명칭 변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인가)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익인정을 받아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와 공익법인의 품위에 반하지 않으면 인가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의 사원과 그의 기명날인
2.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③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제20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3.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목적별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8.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의 시정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시하고 관할 등기소에 공익법인 명칭 변경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등 권리구제)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무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공익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의 신임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2.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
 3. 공익법인의 임원이 공익법인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4. 공익법인이 가진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증진하는 것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인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및 취소업무
 2. 공익법인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3. 공익법인의 행정에 있어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그 부정 행위 및 경영실수에 대한 예방 및 구제책 강구
 4.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업무
-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⑥ 위원은 법률, 회계 및 재무 또는 공익법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 ⑦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⑧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이사, 감사 등 임원) ① 공익법인에는 재무, 회계, 해당 공익법인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에 신고 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자산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에 신고 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어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1조(이사회 기능, 소집, 의결 등)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⑦ 이사회 의사의(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2.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3.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고정자산 등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정관의

로 정한 매년 일정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등의 보고와 공시)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운영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예산편성, 회계, 수익사업 등의 구분경리, 공익목적사업별 전용계좌 사용, 재산목록의 비치 및 제출, 열람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청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無償貸付)한다.

제26조(교육·관리·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보고의 요구, 장부·서류·물건의 검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조세감면 등) ①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 등) ①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① 제2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거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익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로 한다.

③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민공익위원회의 인가”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4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0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⑦ 포물러윈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익목적사업 등(제2조 관련)

1.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2.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여성 등 지원
3. 복지증진, 저출산, 고령화 지원
4. 지역·계층 간 소득불평등 양극화 갈등해소
5. 근로의욕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6. 사고, 화재, 지진,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예방과 그로 인한 피해자 구조 및 보호 지원
7. 수용자 및 전범자 교육 및 돌봄서비스
8. 교육-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형성을 위한 계획적인 활동, 개인 및 세대의 지식과 역량 강화, 일반교육, 직업교육, 재교육, 평생 교육
9. 아마추어 생활체육 스포츠
10. 정치적, 인종차별적, 종교적 피해자 지원, 난민, 전쟁고아, 전쟁희생자 및 미망인 지원, 실종자 수색지원
11. 인종, 성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철폐 및 평등 증진
12. 혼인과 가족 보호
13.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14. 자연보호, 환경보호, 공중위생
15. 사회공동발전 통합 증진 - 국민들 간의 이해증진, 다양한 국적출신 간에 문화적, 교육 적, 학문적으로 결속력 강화
16. 건전한 교육, 재정, 국방, 사회 등 국민의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시민활동
17. 남북통일, 평화구축 및 통일의 준비
18. 국제 상호이해 증진 및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 국외봉사활동
19.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 - 지역풍습·전통·문화 보존, 향토연구
20. 소비자 보호 및 상담
21. 문화재 보호 및 관리증진
22. 동물보호
23. 인권보호, 실태 파악, 전과를 통한 인권향상
24. 부패방지
25. 국토의 이용·정비·보전 - 독도
26. 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를 지원(종합적 분류·분석·공시 등)하는 사업
27. 기타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별표 2]

공익법인 표준정관(제4조 관련)

제1조(명칭 및 주소지) 이 정관에 따른 법인은 ○○○공익사단(재단) 법인으로, ○○○시에 주소지를 둔다.

제2조(목적) 법인의 목적은 ○○○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목적사업을 말한다)

1. ○○○
2. ○○○

제3조(목적사업) 법인의 정관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제2조제1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기본원칙) ①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의 수단은 정관상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은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

③ 법인은 정관상 목적에 반하는 지출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사, 감사, 사원, 사용인 등에 대한 보수 등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법인은 어떠한 정치활동(정치인 후원, 지원,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일정액(매년 운영재산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존립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지출하는 운영계획을 5년 단위로 실시한다(사단법인 및 자산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재단법인은 제외한다).

⑥ 불법적이거나 기본적인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잔여재산귀속)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